

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 - 5호

『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1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어 마을 간이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있으나 수도급수 신청 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이 부담되어 급수신청을 기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아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감면해 복지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자에게 시설분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 신설(안 제14조제7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. 1. 24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-6234, 팩스 440 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·반여부와 그 사유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나. 관련 규정검토와 발췌사항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범위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계량기 및 시설분담금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4조(계량기 및 시설분담금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시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범위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☐ 지방자치법 ○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<u>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</u>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☐ 수도법 ○ 제71조(원인자부담금)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(주택단지·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<u>수도공사·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</u> 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○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수급권자"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 2. "수급자"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 3. ~ 11. 생략
관련법규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음에 따른 세입감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급수공사 신청 시 시설분담금 감면에 따른 세입의 순감소액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.

※ 세외수입 감소액(연간)

연간	급수공사 시설분담금(연간)	비 고
73,800천 원	369,000천원/5년 = 73,800천원/년	신설공사는 수요자의 신청에 의해 시행되므로 연간 신청건수를 예측이 곤란하여 향후 5년간 균등 배분함

※ 세외수입 감소액(총계)

총계	급수공사 시설분담금	비 고
369,000천원	360천원 × 1,025가구 = 369,000천원	

주1) 급수공사 시설분담금(1가구 기준) : 360천원

주2) 미급수세대 중 수급자 세대 : 1,025가구(2016.11월 기준)

4. 작성자

-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김수환